

11.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5,983호 1998. 12. 31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개발부담금이 감면되는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완료후 5년이내에 당초의 개발사업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감면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이 경우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유를 천재·지변으로 당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,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(1998. 9. 19, 법률 제5572호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

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법 제9조제3항”을 “법 제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삭제한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

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
2.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

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
내지 제6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1항을 다음
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제4항(종전의 제3항)
전단 및 제5항(종전의 제4항)중 “제2항”을
각각 “제3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6항(종전의
제5항)중 “제4항”을 제5항“으로 한다.

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특별한 사유”
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를 말한다.

1. 천재·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
인하여 당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

은 경우

2.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
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
제21조의 제목중 “위임”을 “위임 등”으로 하
고, 동조 제1항제1호중 “산정 및 정산”을
“산정”으로 하며,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“제
3조제2항”을 각각 “제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